

# 영유아의 장애위험 조기발견·개입지원과 인식개선을 위한 업무 협약서

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와 한국장애인개발원, 국민건강보험공단(이하 ‘협약기관’이라 한다.)은 장애위험 영유아 조기발견·개입지원과 인식개선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상호 신의성실에 기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.

**제1조(목적)** 본 협약은 기관 간 상호 긴밀한 업무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영유아의 장애위험을 조기발견하고 적시에 개입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지원하고 조기개입에 관한 인식을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다.

**제2조(업무협력 범위)** 협약기관이 추진하는 업무협력의 범위는 다음과 같으며, 구체적인 사항은 상호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.

- ① 영유아 발달선별검사, 재활 관련 서비스 등에 대한 연계지원, 부모안내·교육, 홍보 등에 필요한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제공
- ② 영유아의 장애위험 조기발견·개입지원과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 추진
- ③ 기타 협약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추진

**제3조(개인정보 보호 및 비밀유지의 의무 등)**

- ① 협약기관은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을 준수해야 하며, 청렴·윤리·인권보호·이해충돌 방지 노력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.
- ② 협약기관은 협약이행·교류·협력과정에서 취득한 일체의 정보를 이 협약의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,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를 제3자에게 공개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법령의 규정에 의하거나 정부기관 등의 적법한 요청에 의한 경우는 예외로 하며, 이 모든 사항은 협약기간이 만료한 후에도 유효하다.

**제4조(협약 기간)** 본 협약은 양측이 서명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2024.

12. 23. 까지 유효하다. 다만, 협약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당사자가 협약 종료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한 때 매 2년마다 같은 내용으로 갱신된 것으로 본다.

**제5조(기타)** 이 협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해석상의 이견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협약기관이 합의하여 결정하며, 협약과 관련된 진행 상황과 정보 등을 지체 없이 상호 공유한다.

본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서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3부 작성하고 각 기관의 대표자가 서명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.

2022. 12. 23.



센터장 나성웅

원장직무대리 최웅선

이사장 강도태